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포항시보

제1112호 2016. 9. 20(화)

◀ 훈 령 ▶

- 포항시 담당관, 과장, 읍·면·동 담당 규정 일부개정규정(제322호) 2
- 포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정 일부개정규정(제323호) 5

◀ 공 고 ▶

- 제23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포항시의회 제7호) 10

회 람									
--------	--	--	--	--	--	--	--	--	--

훈 령

포항시 담당관, 과장, 읍·면·동 담당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포 항 시 장 이 강 덕

2016년 9월 20일

포항시 훈령 제322호

**포항시 담당관, 과장, 읍·면·동 담당 규정
일부개정규정**

포항시 담당관, 팀·과·소장, 읍·면·동 담당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본부(국·소·원)장 및 담당관, 과장, 읍·면·동 지도담당표

□ 총괄 책임 : 부시장

읍면동별	본부·국·소장	담당관, 팀·과·소장	비고
구룡포읍	일자리경제국장	수산진흥과장	
연일읍	환경해미래전략본부장 건설교통사업본부장	형산강사업과장 차량등록과장	
오천읍	일자리경제국장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재정관리과장 교통지원과장	
대송면	환경해미래전략본부장 복지환경국장	미래전략산업과장 여성출산보육과장	
동해면	환경해미래전략본부장 도시안전국장	해양산업과장 도시재생과장	
장기면	일자리경제국장 건설교통사업본부장	투자기업지원과장 도로시설과장	
호미곶면	맑은물사업본부장	하수도과장, 하수재생과장	
상대동	- 복지환경국장	감사담당관 환경식품위생과	
해도동	건설교통사업본부장 평생학습원장	대중교통과장 시립도서관장	
송도동	자치행정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문화예술과장 국제협력관광과장	
청림동	- 일자리경제국장	홍보담당관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제철동	남구보건소장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효곡동	남구보건소장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대이동	환경해미래전략본부장 자치행정국장	항만물류과장 정보통신과장	
홍해읍	건설교통사업본부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건설과장 농업정책과	
신광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청하면	맑은물사업본부장	상수도행정과장	
송라면	복지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기계면	복지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축산과장	
죽장면	도시안전국장	도시녹지과장	
기북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식품유통과장	
증양동	- 복지환경국장	정책기획관 주민복지과장	
양학동	맑은물사업본부장	상수도과장, 정수과장	
죽도동	도시안전국장 북구보건소장	안전관리과장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용흥동	자치행정국장 도시안전국장	예산법무과장 건축과장	
우창동	평생학습원장 북구보건소장	평생교육과장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두호동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새마을체육산업과장	
장량동	도시안전국장	도시계획과장	
환여동	평생학습원장 -	시립미술관장 공원녹지사업소장	

1. 개정이유

-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부서별 지정된 행정지도 담당 읍면동 일부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 설치

▪ 환동해미래전략본부

- 미래전략산업과, 형산강사업과, 해양산업과, 항만물류과

나. 기구의 소속 및 명칭변경

- 창조경제국 → 일자리경제국 ▪ 건설도시안전국 → 도시안전국
- 도시건설사업소 → 건설교통사업본부 ▪ 맑은물사업소 → 맑은물사업본부
- 부시장 직속 투자유치 담당관 → 일자리경제국 투자기업지원과
- 자치행정국 정책기획과 → 부시장 직속 정책기획관
-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팀
- 복지환경국 청소과 → 자원순환과
- 건설안전도시국 산림녹지과 → 도시안전국 도시녹지과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정과 → 농업정책과
- 도시건설사업소 도로과 → 건설교통사업본부 도로시설과

다. 신설부서

- 건강관리과, 교통지원과, 대중교통과, 공원녹지사업소

라. 기구의 통합

- 새마을민원과 + 체육지원과 → 새마을체육산업과
- 일자리창출과 + 경제노동과 → 일자리경제노동과
- 여성가족과 + 출산보육과 → 여성출산보육과
- 환경관리과 + 식품위생과 → 환경식품위생과
- 건설과 + 업무시설과 → 건설과

포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포 항 시 장 이 강 덕

2016년 9월 20일

포항시 훈령 제323호

포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정 일부개정규정

포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포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정”을 “포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자치부령 제4호) 제14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4조”로, “지방재정투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의 심사에 관하여”를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심사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사업”을 “포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을 “홍보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5.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제3조제1항제7호(중전의 제5호) 중 “그 밖의 시장”을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제4호) 제3조제2항 각호”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3항에 따라”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투자사업”을 “투자사업”으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료전이라”를 “만료 전이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포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정</p>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제4호) 제14조에 따라 포항시 지방재정투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투자심사기준) 투자사업의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략)</p> <p>제3조(자체 투자심사 대상사업) ① 이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1.·2. (생략)</p> <p>3.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p> <p><신 설></p> <p><신 설></p> <p>4. (생략)</p> <p>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포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정</p> <p>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4조-----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심사에 -----</p> <p>-.</p> <p>제2조(투자심사기준) 포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3조(자체 투자심사 대상사업) ① ----- 따른 -----.</p> <p>1.·2. (현행과 같음)</p> <p>3. ----- 홍보관 -----</p> <p>4.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p> <p>5.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p> <p>6. (현행 제4호와 같음)</p> <p>7.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p>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제4호) 제3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 의뢰를 받은 예산담당부서장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12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9조(투자심사위원회 설치) ①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포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위원회를(이하 "투자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2항 각호-----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

----- 제4조제2항에 따른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투자심사위원회 설치) ① 투자사업-----
----- 시장-----

<p>② ~ ⑦ (생략)</p> <p>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u>만료전이라도</u>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p>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 ----- ----- <u>만료 전이라</u>----- ----- -----.</p>
---	--

1. 개정이유

- 지역 행사·축제 효율화를 위하여 재정투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2016.6.30.),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시행 2016.7.1.)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체심사 투자심사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무분별한 행사·축제 개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공연·축제, 홍보관 사업’을 구분하여 개정
 -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제3조제1항제3호)
 -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제3조제1항제4호)
- 나. 상위법에 근거하여 외국차관도입사업과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조항을 신설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 투자사업(제3조제1항제5호)
-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공 고

포항시의회 공고 제7호

제 23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포항시의회 의원 정수화 외 11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 232회 포항시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시 : 2016년 9월 26일(월요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 포항시의회 본회의장

2016년 9월 19일

포항시의회의장 **문 명 호**